

# 제74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19.5.2.(서면심의)

## □ 인건명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

위 안건에 대한 제74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

### 【주요 심의내용】

- 가시설 설계에서 '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수 공법을 선정'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
- 과업 노선 주변 도로 소음측정은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-by 기법을 이용하고 소음지도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
- 지하차도 설계 관련 '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 수위와 설계수위를 검토하여 반영' 및 '집중 호우시 지하차도내 우수유입 배제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'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
-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『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』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것
-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(SMCS, 2018년 개정)를 적용하고,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작성토록 할 것

첨부 :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 끝.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## 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○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지반보고서는 발주기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지반조사에서 '공간정보담당관 제출'은 삭제하고, 기존 지반조사 자료 활용 관련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(p2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「지반정보관리시스템」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(한글, 워드, PDF, CAD 등)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.</li> <li>⇒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'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'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 형식(한글, 워드, PDF, CAD 등)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.</li> <li>- 시스템명 수정: 서울특별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→ 서울특별시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surveycp.seoul.go.kr">http://surveycp.seoul.go.kr</a>)</li> <li>- 추가: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(<a href="http://www.geoinfo.or.kr">http://www.geoinfo.or.kr</a>)</li> </ul> <p>○ 내진설계 자료 요약서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서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계보고서, 구조계산서,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</li> <li>※ 근거: 시설물 내진관련 건설기술심의 내실화 방안 기술심사담당관-10025(16.6.7)</li> </ul> <p>○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(SMCS, 2018년 개정)를 적용하도록 하고,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(KCS)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 작성토록 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시방서 작성시 시공편의를 위한 현장활용서를 추가 작성할 것</li> <li>※ 현장활용서 작성시 서울시 전문시방서 부록(현장활용서) 참고하여 작성</li> <li>- 성과품납품목록 : 공사시방서 → 공사시방서(현장활용서 포함) p71</li> </ul> <p>○ 배수시설 설계 관련 확률년수에 따른 강우강도식 및 확률강우량은 2018.1.22. 수립된 「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(p46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현기간 10년: 강우강도식 <math>\frac{586.5237}{t^{0.4621} + 1.1235}</math>, 확률강우량 75.6mm</li> </ul>	

	<p>- 재현기간 30년: 강우강도식 <math>\frac{993.3199}{t^{0.5162} + 2.4809}</math>, 확률강우량 92.9mm</p> <p>○ 설계내역에는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과업내용서에는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상호 불일치 하므로 일치 되도록 검토할 것</p> <p>○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국토교통부)」이 '18.1.1부터 시행 중이므로,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에 등 법을 포함하도록 할 것(p18)</p> <p>○ 부서명은 최신 기준으로 수정할 것</p> <p>- 보도환경개선과 → 보행정책과 (p42)</p>	
<p>전기 분야</p>	<p>○ '1) 설계기준'에 아래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18)</p> <p>- 전기설비 기술기준 ⇒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</p> <p>○ '1) 운전자 고려사항'에 아래 사항을 추가할 것(p50)</p> <p>- 차로폭 축소 및 평면교차로 신설시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, 휘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한다.</p> <p>○ '3) 신호등 설계'에 아래사항을 추가할 것(p50)</p> <p>가. 신호기 부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교통신호기(신호제어기, 신호등, 지주 등 포함)설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2) 케이블(전기, 통신, 신호) 공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3) 관로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4) 접지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5) 기타 부대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</li> </ol> <p>다. 안전표지 부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가로등 및 가로수 등 기존 시설물의 위치를 고려, 시인성 저해요인 지양</li> <li>2) 한 장소에 여러 개의 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 각각의 시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</li> <li>3) 동일한 지주에 3개 이상의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</li> <li>4)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</li> <li>5) 도로상황에 맞는 표지판을 선정</li> </ol> <p>○ '5) 가로등 설치기준'에 아래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것(p51)</p> <p>- 가로등 설치 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심의대상 시설일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신청</p>	

	<p>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가로등 이설 및 교체시 운전자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점등없이 시행 하여야 한다.</li> <li>- 등기구의 배광곡선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등기구를 반영하여 인접 건축물 등에 빛공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</li> <li>- 전력부하계산서, 조도계산서(시뮬레이션 포함), 전압강하계산서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계산결과를 설계도서에 적용하여야 한다.</li> <li>- 보행로 및 버스정류장 설치에 따른 등기구 용량 증가 및 등주 추가 설치시 조도계산서(시뮬레이션 포함)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, 시공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할 것 ⇒ 가로등은 주변의 다른 조명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하고, 도로와 도로 주변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하여야 한다.</li> </ul>	
<p>기계 분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p39) 제4장 실시설계 1.일반사항 2)의 (1)항과 p48) 10.방재시설설계 2)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제시할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. 일반사항 : 지하차도 방재등급은 연장 및 위험도 기준을 검토하여 선정한다.</li> <li>- 10. 방재시설 설계 :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하차도의 방재등급은 1등급으로 설정하여야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13. 기전설비설계 6)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(p51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의 구조,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해양부령 제223호 2015.7.22)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[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25호]에 따르며 ... 한다.</li> <li>→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 2015.7.22.) 및 도로터널의 화재 재안전기준(소방청고시 제2017-1호)에 따르며 ...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23.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3) 관련법령 및 기준의 아래내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(p1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14) 기타 관련법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(14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</li> <li>(15) 기타 관련법규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
<p>종합의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조건부채택</b></p>	

2019년 4월 일

심의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(서명)

본 검토서는 2019.4.25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제1공구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사항의 조치 여부 검토 필요</p> <p>(1) 청담도로공원은 신천나들목과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과 물리적 거리가 있어 직접 연관성이 낮음에도 전기·통신설비의 설계가 필요한지 연계설비로서 필요하다면 설명 포함이 필요(52쪽, 11)번)</p> <p>(2) 공원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CCTV설비가 사업지의 공원접근동선 진입구부터 계획되어야 해야할 듯함(53쪽, (4)번)</p> <p>(3) 교통처리계획도상에도 보행자 이용도로계획도 상에 지상공원 및 청담도로공원 보행자접근도로계획 포함 여부 검토(65쪽, ⑦)</p> <p>2. 참조할 기준해설 및 지침은 발행년도를 포함하거나 '최신판'이나 단서(※ 또는 각주 등) 설명이 필요해 보임(53쪽, 4) 등)</p>	
종합의견	원안채택	

2019년 4월 25일

심의위원 : 이미영

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		비 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변경)	비 고
	4	3.과업의 개요 1) 과업의 위치 ~~ 조정이 필요한 경우 <u>우리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</u> 하여 조정한다	3.과업의 개요 1) 과업의 위치 ~~ 조정이 필요한 경우 <u>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</u> 협의하여 조정한다	내용변경
	5, 6 포 내용 등일 적용	3.과업의 개요 1) 과업의 위치 (포내용) 3공구 삼성교 차로 확장 (포내용) 3공구 삼성교 및 봉은교 보행로 확대 삼성교(L=280m), 봉은교 (L=270m) 구간	3.과업의 개요 1) 과업의 위치 (포내용) 3공구 삼성교 차 로확장 및 보행로 확대 (포내용) 3공구 봉은교 보행로 확대 봉은교(L=270m) 구간	내용변경  내용변경
	5, 6, 7	3.과업의 개요 4.과업기간	3.과업의 개요 4.과업기간 - <u>공구별로 해당하는 내용만</u> <u>포기하고 해당사항 없는</u> <u>내용 삭제 필요</u>	내용삭제 필요
	5	3.과업의 개요 2) 과업의 범위 및 규모 ~~ <u>교통분석 및 평가</u> ,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,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,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, ~~ 기타 <u>우리청이 계약서~~</u>	3.과업의 개요 2) 과업의 범위 및 규모 ~~ <u>교통 현황 조사 및 분석</u> , <u>재해영향평가</u> , 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, 구조물 형식 결정, 구 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, ~~ 기타 <u>발주기관이 계약서~~</u>	내용변경, 삭제, 추가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		비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변경)	비고
	6	3.과업의 개요 3) 과업의 내용 (7) ~~ 개선에 따른 <u>효과분석</u> ① <u>효과측정은 사업시행~~</u> ③ <u>~~ 도로시설에 대한 파급 효과</u>	3.과업의 개요 3) 과업의 내용 (7) ~~ 개선에 따른 <u>영향분석</u> ① <u>영향분석은 사업시행~~</u> ③ <u>~~ 도로시설에 대한 영향 분석</u>	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
	7	3.과업의 개요 3) 과업의 내용 (8) 공사중 <u>교통처리계획 및 운영시 교통처리계획과 각 단계별 ~~</u>	3.과업의 개요 3) 과업의 내용 (8) 공사중 <u>교통처리계획과 각 단계별 ~~</u>	내용삭제
	7	3.과업의 개요 3) 과업의 내용	3.과업의 개요 3) 과업의 내용 (11) <u>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</u> <u>당초 (11)→(12), (12)→(13), (13)→(14), (14)→(15), (15)→(16), (16)→(17), (17)→(18)</u>	내용추가 내용변경
	7	3.과업의 개요 4) 과업기간 (표내용) 4공구 <u>과업기간 18개월</u>	3.과업의 개요 4) 과업기간 (표내용) 4공구 <u>과업기간 21개월</u> : 통합관리를 위해 공기 통일 필요	내용변경
	8	4.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(5) <u>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</u>	4.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(5) <u>관할 구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때</u>	내용변경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		비 고
	Page	과업내용서(탈초)	수 정 사 항(법경)	비 고
	8	4.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(6) <u>공공측량 계획</u>	4.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(6) <u>공공측량 계획 및 지반조사 계획</u>	내용변경
	11	8. 계약상대지의 책임 1)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(1) 계약상대자는 <u>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</u>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~~	8. 계약상대지의 책임 1)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(1) 계약상대자는 <u>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~~</u>	내용삭제
	12	9. 설계자문 등 1) <u>자문회의 자료의 제출</u> <u>본 과업수행 기간 중 ~~</u>  1)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2)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3) 건설사업관리 4)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	9. 설계자문 등 1) <u>자문시기</u> <u>Page14의 (3) 내용으로 기입</u> <u>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.</u> <u>①~~, ②~~, ③~~,</u> <u>④~~</u> 2) 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3)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4) 건설사업관리 5)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	내용변경       번호변경
	15	15. 과업내용 변경 1) 아래와 같은 사항이~~ (3) <u>실조사(지반, 문화재 고증, 지표조사 등)~~</u>	15. 과업내용 변경 1) 아래와 같은 사항이~~ (3) <u>실조사(지반, 문화재 지표조사 등)~~</u>	내용삭제



○ 안전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		비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변경)	비고
	17	21.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) 발주기관 제공자료	21.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) 발주기관 제공자료 (8) <u>과업지역 연속지적도</u>	내용추가
	20	24.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3) 관련법령 및 기준	21.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3) 관련법령 및 기준 (8) <u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당초 (8)→(9), (9)→(10), (11)→(12), (12)→(13), (13)→(14), (14)→(15)</u>	내용추가 번호변경
	21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3) <u>대기환경의 질 개선이 가능한 수중선정 및 수질정화 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3) <u>대기환경의 질 개선이 가능한 수중선정을 고려하여야 한다.</u>	내용변경
	21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3) <u>우기·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</u>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3) <u>우기·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우회를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</u>	내용변경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		비고
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변경)	비고	
21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2) 발주기관은 <u>기본(또는 실시) 설계에~~</u>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2) 발주기관은 <u>기본 및 실시 설계에~~</u>	내용변경	
21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4) ~~건설사업관리를 <u>시행할 수 있으며</u> 계약상대자에게~~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4) ~~건설사업관리를 <u>시행하고</u> 계약상대자에게~~	내용변경	
21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5) 건설안전을 ~~ ⑦ 부서지기 쉬운 <u>자재가 최소</u>	25.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)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(15) 건설안전을 ~~ ⑦ 부서지기 쉬운 <u>자재는 사용</u>	내용변경	
22	26. 기타사항 2) <u>신절 보정</u> 작업은~~	26. 기타사항 2) <u>시·종절 보정</u> 작업은~~	내용변경	
23	1. 조사항목 2) <u>수문조사</u>	1. 조사항목 2) <u>수리·수문조사</u>	내용변경	
23	1. 조사항목 <u>14) 관련계획 자료조사</u>	1. 조사항목 <u>- 14)항목 삭제 (9)와 중복) 당초 (15)→(14)</u>	내용삭제 내용변경	
26	2. 조사내용 5) <u>지반조사 및 토질시험</u> (1) 일반사항 ④ <u>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</u> <u>- 가설비 계획</u>	2. 조사내용 5) <u>지반조사 및 토질시험</u> (1) 일반사항 ④ <u>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</u> <u>- 가설 계획</u>	내용변경	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		비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별경)	비고
	34	1. 기본계획 검토 2) 제2장 “조사 업무”를~~ (13) <u>기타</u> 관련 사업계획 등	1. 기본계획 검토 2) 제2장 “조사 업무”를~~ (13) <u>기타</u> 관련 사업계획 등	내용변경
	34	4. 노선 및 구조물 형식· 공법 계획 2) 구조물 설계 (4) <u>도로설계편람</u> (국토교통부, 2012)	4. 노선 및 구조물 형식· 공법 계획 2) 구조물 설계 (4) <u>도로교설계기준</u> (국토교통부, 2012)	내용변경
	35	2. 관련계획 검토 3) 다음사항에 대하여~~ (4) 다음사항에 대하여~~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 유역환경청과의 협의	2. 관련계획 검토 3) 다음사항에 대하여~~ (4) 다음사항에 대하여~~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<u>한강</u> 유역환경청과의 협의	내용변경
	36	6. 기본설계 2) 기본설계는 ~~ 이를 설계 도서로 작성하고, 각종 인· <u>허가를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.</u>	6. 기본설계 2) 기본설계는 ~~ 이를 설계 도서로 <u>작성한다.</u>	내용변경
	37	7. <u>설계VE 등 경제성 분석</u>	7. <u>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(설계 VE)</u>	내용변경
	38	9. 기 타 1) 설계도서는 “도로의 구조· 시설 기준에 관한 <u>규정</u> ” 및	9. 기 타 1) 설계도서는 “도로의 구조· 시설 기준에 관한 <u>규칙</u> ” 및	내용변경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		비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변경)	비고
	39	1. 일반사항 1)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, 기본설계 각 단계에서~~	1. 일반사항 1) 기본설계 각 단계에서~~	내용변경
	40	2. 토공설계 7) <u>깎기법면</u> 경사지의 처리 영구 <u>깎기법면</u> 경사는	2. 토공설계 7) <u>깎기법면</u> 경사지의 처리 영구 <u>깎기법면</u> 경사는	내용변경 내용변경
	41	4. 포장설계 2)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<u>도로포장 설계·시공지침</u> 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야 하며,	4. 포장설계 2)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<u>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</u> 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야 하며,	내용변경
	43	7. 구조물설계 1) 교량 (1) 교량계획 기본사항 ①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~~ - <u>교량은 200년 이상의 홍수빈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.</u>	7. 구조물설계 1) 교량 (1) 교량계획 기본사항 ①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~~ - <u>하천 통과교량의 설계빈도는 "하천설계기준"에 따른 표준설계빈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.</u>	내용변경
	44	7. 구조물설계 1) 교량 (3) 내진설계 <u>도로교시방서</u>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,	7. 구조물설계 1) 교량 (3) 내진설계 <u>도로교설계기준 및 관련시방서</u>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,	내용변경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		비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변경)	비고
	44	7. 구조물설계 1) 교량 (8) 형하공간은 시설한계, 유지관리공간, 도로, <u>하천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.</u>	7. 구조물설계 1) 교량 (8) 형하공간은 시설한계, 유지관리공간, 도로, <u>하천유지관리,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.</u>	내용변경
	45	7. 구조물설계 2) 지하차도 (2) 지하차도 형식선정 ②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- 주행성 향상을 위한 도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하고 <u>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</u> <u>~~</u>	7. 구조물설계 2) 지하차도 (2) 지하차도 형식선정 ②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- 주행성 향상을 위한 도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하고 <u>국회대로 지하화 및 창동</u> <u>- 상계 지하화 등 ~~</u>	내용변경
	46	7. 구조물설계 3) <u>옹벽설계</u>	7. 구조물설계 4) <u>옹벽설계</u>	내용변경
	46	8. 배수시설 설계 3) 도로 횡단 배수관의 <u>최소규격은 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.</u>	8. 배수시설 설계 3) 도로 횡단 배수관의 <u>최소규격은 1000m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800mm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.</u>	내용변경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		비고
	Page	과업내용서(탈초)	수 정 사 항(별경)	비고
	50	13. 기전설비 설계 1) 운전자 고려사항 (8) ~~조명은 조도, 광색 등이 <u>조화가</u> 이뤄지도록	13. 기전설비 설계 1) 운전자 고려사항 (8) ~~조명은 조도, 광색 등이 <u>조화가</u> 이뤄지도록	내용변경
	50	13. 기전설비 설계 2) 배선, 점멸방식, 수신기 ~~ <u>조도계산서(시물레이션 포함)</u> , 부하용량계산서~~	13. 기전설비 설계 2) 배선, 점멸방식, 수신기 ~~ <u>조도계산서</u> , 부하용량계산서~~	내용변경
	53	14. 기타 부대시설 설계  9) 기타	14. 기타 부대시설 설계 9) <u>지하차도와 나들목이 근접 설치되어 있으므로 ITS 설치 계획을 검토</u> 10) 기타	내용추가  내용변경
	60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) <u>주요구조</u> 및 수리계산서 작성 (1) <u>주요 구조</u> 계산서 (2) <u>주요 수리</u> 계산서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3) <u>구조</u> 및 수리계산서 작성 (1) <u>구조</u> 계산서 (2) <u>수리</u> 계산서	내용변경
	65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) <u>공사시방서</u> 작성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) <u>공사시방서</u> 작성	내용변경
	66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) <u>설계 예산서</u> 작성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6) <u>설계 예산서</u> 작성	내용변경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		비 고
	Page	과업내용서(당초)	수 정 사 항(현경)	비 고
	67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6) 용지도 · 지장물 조서 및 인·허가 서류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7) 용지도 · 지장물 조서 인·허가 서류	내용변경
	68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7) 조감도 작성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8) 조감도 작성	내용변경
	68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8) CD 작성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9) CD 작성	내용변경
	68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9) 기타	2.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0) 기타	내용변경
	70	1.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(기본설계)	1.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(기본 및 실시설계)	내용변경
	70	1.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(기본설계) 2) 최종성과품	1.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(기본 및 실시설계) <u>기본설계 성과품에 있는</u> 2) 최종성과품 은 삭제	내용삭제
	71	2.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(실시설계) 1) 최종성과품 실시설계보고서	- 삭제 - 2) 최종성과품 종합보고서	내용삭제 내용변경 내용변경
<p>(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</p> <p>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			

2019년 4월 25일

심의위원 : 이 종 호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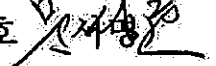
본 검토서는 2019.4.25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소음진동 분야	<p>"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"함에 있어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-by 기법(Statistical Pass-by)을 이용하며 측정하고 또한 향후 소음지도(Noise Map)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소음과 교통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되며, 이를 통해 공사장 소음 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.</p>	
종합의견	<p>(조건부채택)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                    ※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</p>	

2019년 4월 25일

심의위원 : 문 성 호 

※ 서면심의이므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한글파일 별도 송부)

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	<p>1. (과업내용서 p.29) ⑤ 실내시험 하단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.</p> <p>(당초) 시료에 대한 시험은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(수정) 시료에 대한 시험은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2. (과업내용서 p.43) 6. 가시설설계의 8)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.</p> <p>(당초) 가시설 설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문기술자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(수정) 가시설 설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토질및기초 분야 전문기술자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3. (과업내용서 p.43) 6. 가시설설계 세부 항목중 아래 내용을 추가 요망.</p> <p>(추가) 9)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조건을 고려한 적합한 차수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 (발주처 검토후 반영)	

2019년 4월 24일

심의위원 : 전 제 성


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구조	<p>1. 제1장 일반사항, 9. 설계자문, 2) 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 “심의 및 자문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의견을 반영 한다”는 내용 추가 바람.</p> <p>2. 제1장 일반사항, 11.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, 1) 심의시기 (3)번 내용은 9. 설계자문 등의 1)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.</p> <p>3. 제2장 조사업무, 2. 조사내용, 5)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(2) 조사 및 시험, ③ 시추조사, d. 지하수위 측정에 “지하수위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업기간 동안에 실측수위를 조사하여 설계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”는 내용 추가 바람.</p> <p>4. 제4장 실시설계, 7. 구조물설계, 2) 지하차도 (8) 부력에 대한 안전성검토에 “안전성검토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측조사수위와 설계수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”는 내용 추가 바람.</p> <p>5. 제4장 실시설계, 7. 구조물설계, 2) 지하차도 (10) 집중호시 차수대책 내용 추가 “① 집중호우시 지하차도내 우수유입을 배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 반영한다. ② 집중호우시 집수정 기계설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차수안전대책을 수립한다. (11) 지하굴착에 따른 “지하안전영향평가” 대상여부를 확인하고, 설계 반영여부를 확인한다. (12)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상부 보행동선의 연결을 검토하고, 보행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. 내용 추가 바람.</p> <p>6. 제4장 실시설계, 7. 구조물설계, 2) 지하차도 (2) 지하차도 형식선정, ②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에 “경인고속도로 지하화” 내용은 본 과업과 무관하므로 삭제.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9년 4월 25일

심의위원 : 남 상 진 

본 검토서는 2019.4.25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구조	<p>1. 자구 수정</p> <p>(1) p13 2) “지적 및 자문사항의 조치”에서 “지적 및”은 삭제</p> <p>(2) p13의 3)항은 내용은 p11의 7. 용역감독 등의 3) 항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“3) 건설사업관리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만수기관을 설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장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”</b></p> <p>(3) p13의 3)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“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장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”</b></p> <p>(4) p63 “⑫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,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...”에서 부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바람</p> <p>(5) p65 ⑧ 지장물도 작성항목에 다음을 추가하기 바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-제 2장 조사업무 4) 지장물 조사 (2) 확인 및 도면 작성에 의한다.”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,	

2019년 4월 25 일

심의위원 : 조미리

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토목시공	<p>1. 11page 8. 계약상대자의 책임 1)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에 (4)번 항목으로                      &lt;(4)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&gt; 내용 추가요망</p> <p>2. 17page 22. 하도급 사항에                      &lt;7)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&gt; 7)번 항목 추가요망</p> <p>3. 53page 14. 기타 부대시설 설계                      5) 차선도색                     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며 필요시 도시교통본부(교통운영과)와 협의한다. ⇒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고 시인성이 개선된 장수명 공법의 적용을 검토하며 필요시 도시교통본부(교통운영과)와 협의한다.</p> <p>4. 44page 7. 구조물설계(2)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                     - 강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도장시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 ⇒ 강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국도 시방서를 참조하여 50년이상 장수명 방식공법 적용을 검토하며 도장시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</p>	
종합의견	조건부 채택	

2019년 4월 25 일

심의위원 : 김 영섭 (서명)

김 영 섭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기계 설비	<p>1. 지하차도에 대한 배수설비(배수펌프) 운영을 위한 전기실은 홍수, 폭우 등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에 설치하도록 계획할 것을 명시해야함</p> <p>2. 과업지시서 내용 중 51페이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13. 기전설비 설계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6) 환기시설, 소화설비, 배수 및 통신설비 등 설치계획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(1) 지하차도 내 환기시설은 Bypass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~</p> </div> <p>- 지하차도 환기방식 선정에 있어 Bypass방식 적용여부는 환기방식 검토 후 기계환기 필요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주변 대기질이 법적 기준 초과시 적용해야함</p> <p>- 따라서, 환기방식 결정 전 지하차도 개통시에 대한 대기질 예측 필요함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상기 내용을 대기질 예측결과에 따라 적용여부 결정하도록 변경해야함</p> <p>3. 과업지시서 내용 중 19페이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24.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) 적용기준 및 사양서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(22) 국가화재안전기준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국민안전처</span>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(26)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3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국민안전처</span></p> </div> <p>-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변경</p> <p>- 과업지시서 51페이지도 확인하여 변경</p>	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기계 설비	<p>4. 본 과업구간에 올림픽대로 지하화구간 지하차도 신설이 계획되어 있어 지하차도에 대한 방재시설 설계가 필요하므로 발주부서에서는 본 용역 발주시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"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"(소방청) 제4조 2항에 따라 추후 지하차도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착공시 소방시설 설계 계약서 사본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함</li> <li>- "소방시설공사업법"(소방청) 제21조, 22종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함</li> </ul>	
종합의견	<p>(조건부채택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계설비 설계에 대하여 과업지시서는 과업 현황에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</li> <li>2. 발주부서에서는 용역발주시 설계완료 후 원활한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</li> </ol>	

2019년 4월 25일

심의위원 : 문 정 주



본 검토서는 2019.4.25(목) 12:00까지 e-mail(allohasy@seoul.go.kr)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 야	검 토 의 견	비 고
기전 설비 설계	<p>페이지 50</p> <p>10. 기전설비설계</p> <p>- 공통사항 항목을 추가한다</p> <p>(1) 기전설비 설계에 있어서는 서울시 도로조명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계하고, 서울시 좋은 빛 위원회의 심의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</p> <p>(2) 조명등기구는 컷오프형을 기본으로 한다</p> <p>(3) 조명의 주광원은 LED 램프를 기본으로 한다</p> <p>(4) 광장등에는 하이마스트 폴을 사용한다</p> <p>(5) 조명 접소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방향 시스템을 적용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에 제시 한다</p> <p>(6)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과 관련하여 도로관리과와 도시빛정책과의 용역설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한다</p> <p>(7) 조명에 대한 음영 및 불쾌감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설계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를 설계에 반영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</p> <p>(8) 지하차도등의 기전설비에 대한 원격제어 및 감시,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</p>	
종합의견	조건부채택	

2019년 4월 25 일

심의위원 : 정 찬 응

 (서명)

#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

○ 안건명 :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(1공구)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심의

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	1.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과업내용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	
종합의견	원안채택	

2019년 4월 25 일

심의위원 : 정 운 수 (서명)